

## FTA 100% 활용하기

캐나다의 통상·통관환경에 대한 이해<sup>1)</sup>



박정준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통상전략센터 연구원

한국과 캐나다의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이하 FTA)은 2005년 1월 25일 제 1차 예비협의를 개최한 지 정확히 10여년 만인 지난 2015년 1월 1일 정식으로 발효되었다. 다만, 오랜 정치외교적 관계와 2012년 3월 15일 발효된 한-미 FTA의 영향으로 ‘북미시장은 곧 미국’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잡아 캐나다에 대한 이해도나 관심의 정도는 미국의 그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그러나 곧 다가올 한-캐나다 FTA 발효 1주년을 앞두고 캐나다의 통상 현황, 그리고 통관환경에 대한 법률적, 제도적 그리고 절차적 이해를 도모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 01 한국 - 캐나다 교류사 I : 19세기 조선 말기

한국과 캐나다 간 교류의 시초는 19세기 조선 말기로 1888년 고종시대다. 캐나다 출신의 기독교 선교사 제임스 스카스 게일(James Scarth Gale; 한국명: 기일 죄一, 1863 ~1937)은 당시 캐나다 토론토를 출발, 밴쿠버, 일본 나가사키를 거쳐 1888년 12월 12일 부산에 도착했고 이것이 한-캐나다 관계사의 시작이었다. 지금은 국제통상의 선도국가

1) 본 원고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서 제작한 「캐나다의 통관 및 운송제도」에 기반하여 작성하였다.

라 할 수 있지만 당시만 해도 서양을 배척하고 대외통상과 교역을 거부하는 쇄국양이정책[鎖國壤夷政策]을 고수해오던 조선은 대외개방에 대한 내외적 요인으로 인하여 고종 13년인 1876년 강화도조약을 계기로 개항을 결정하게 되는데 그로부터 불과 12년만에 캐나다와의 교류가 시작된 것이다.

그 외에도 캐나다는 광복 직후라고 할 수 있는 1947년 한국의 선거과정을 감시하기 위한 UN한국임시위원회에 참여했고, 1949년 대한민국이 공식국가임을 인정한 최초의 국가 중 하나로서도 역할 했다.

이어 1950년 발발한 한국전쟁 당시에는 외국참전군으로는 세 번째로 큰 규모인 26,791명(516명 전사)을 파병한 바 있다. 한국은 1954년에 이미 캐나다 수도인 오타와에 대사관을 설치하였고, 이후 양국은 1963년 공식 수교했으며, 73년에는 서울에도 캐나다 대사관이 개설되었다.

## 02 한국 - 캐나다 교류사Ⅱ : 무역

석탄, 목재, 알루미늄, 철강, 농수산물이 주요 수출 상품인 캐나다와 자동차, 자동차 부품, 전자기계, 철강제품 등을 주로 수출하는 한국은 이론적으로는 자원의 분배를 고려할 때에 상호보완적인 통상환경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는 서로간의 교역규모가 크지 않았다.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가 설립되기도 전인 1989년 미국과의 양자 FTA(CUSFTA), 1994년 멕시코를 추가로 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매개로 하여 캐나다는 미국과의 교역에 무게중심을 둔 반면, 한국은 미국과 일본에 이어 대만, 싱가포르,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등 인접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교역에 힘썼던 것이 원인이다.

다만 1984년 현대자동차가 ‘포니’를 캐나다에 첫 수출하였고, 89년 7월에는 한 주에 2,000대의 ‘소나타’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캐나다 쿠비크주 브로몽(Bromont)에 준공하는 등<sup>2)</sup> 양국교역이 양적, 질적으로 모두 성장하였으며 한 - 캐나다 FTA가 발효된 현재 한

---

2) Joung-Yong, Lee, “Korea-Canada Economic Relations: Korean Perspectives”, CANADA AND KOREA PERSPECTIVES 2000 (Edited by R.W.L. Guisso & Young-sik Yoo) 참고.

국은 캐나다의 7번째 무역국이자 중국, 일본에 이은 아시아 3위 교역파트너로 자리매김 했다.

### 03 세계통상체제에서의 캐나다와 한 - 캐나다 FTA

캐나다는 WTO 설립의 초석이 되었던 우루과이라운드(Uruguay Round, 1986~1994) 당시 협상을 주도했던 쿼드국가(The Quad; 미국, 유럽연합, 캐나다, 일본) 4개국 중 하나로서 역할 한 바 있고, WTO 분쟁해결제도 내 제소국 3위, 피소국 6위에 위치하는 등 세계통상체제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sup>3]</sup>

캐나다는 미국의 최대 투자국인 동시에 에너지 공급국이고, 반대로 미국은 캐나다 최대의 수출상대국(2008년 기준 캐나다 전체 수출의 77.7% 기록)이다.

캐나다는 2015년 3월 기준 총 11개의 FTA를 발효하였는데 미국과 FTA정책이 매우 흡사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캐나다가 발효시킨 11개의 FTA중 10개는 이미 미국과도 앞서 FTA를 발효시킨 바 있으며 최근 타결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에도 양국은 함께 참여 중에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미국, 멕시코와의 NAFTA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 보니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캐나다는 NAFTA 의존도를 감소시키고 경제협력대상을 다변화시키기 위해 신(新) FTA전략을 추진 중이며 한-캐나다 FTA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한 - 캐나다 FTA를 통해 의료, 콘텐츠, 자동차, 항공 분야 등에서의 협력이 기대되며 캐나다 입장에서도 일반적으로 부족했던 아시아의 사업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기타 아시아 국가로의 진출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교두보로서 한국의 역할은 중요하다. 한국 역시 한 - 캐나다 FTA를 통해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로 이어지는 영연방 3개국과의 트라이앵글식(式) FTA를 완성시킬 수 있었다.

---

3) WTO 체제하 분쟁해결제도에 있어서 제소국 1, 2위는 각각 미국과 유럽연합이며 피소의 경우는 미국, 유럽연합, 중국, 아르헨티나, 인도가 캐나다에 앞서 있다.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의 영향으로 캐나다의 무역분쟁은 미국, 멕시코와 연루된 경우가 많은 편이며 그 외에도 유럽연합과 많은 분쟁해결절차를 거쳤다. 한국과 캐나다의 첫 무역분쟁은 이른바 1995년 '생수분쟁'으로 DS20 : Korea, Republic of – Measures concerning Bottled Water로 기록되어 있다.

## 04 캐나다의 통관제도 I : 조직, 절차 및 품목

캐나다 통관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은 바로 캐나다 국경서비스국(Canadian Border Services Agency; 이하 CBSA)이다.<sup>4)</sup> 모든 수입품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물론 아니지만, 캐나다로 수입되는 모든 상업용 제품은 일단 CBSA를 거쳐야만 정식 수입절차를 밟을 수 있다. 모든 수입품에 대해 검사를 하지 않는 것은 신속한 통관절차의 마무리에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sup>5)</sup>, 특히 과거부터 계속해서 꾸준한 주기로 수입되고 있는 제품이나 국민의 건강 또는 안전과의 관련성이 적은 품목, 또는 과거수입 규정 위반 전력이 없는 수출입업자에 한해서는 통상적으로 위에서 언급한 물품검사를 면제해주고 있다.

반면, 초기 수출품목이나 수출입허가법(Export & Import Permit Act), 특별수입규제조치법(Special Import Measure Act; SIMA)에 의해 지정된 품목을 포함하여 농수산물, 의료기기, 의약품, 식료품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품목의 경우에는 다른바 '불규칙선택검사(Random Sampling)'을 통과해야 하며 관련 법령에 의해 정식으로 수입허가를 받고 안전성에 대한 인증을 받는 등 별도의 서류제출이 필요하다.<sup>6)</sup> 이 과정에서 제출된 수입서류와 제품의 부합여부, 위생 상태 및 제품의 안전성 등이 동시 고려되고 확인 후 수입적격여부 판명이 나오게 된다. CBSA에서는 서류 상의 오류가 발견되면 해당 제품의 안전성 입증에 필요한 추가서류 등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

4) 캐나다 CBSA는 국내에서 캐나다 관세청, 국경관리국 / 청, 국경서비스국 / 청,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고 있으며, 그만큼 다양한 업무를 주관하고 있다. 주소는 Canada Border Services Agency, Ottawa, Ontario, Canada이고 우편번호는 K1A 0L8, 전화번호는 1-800-461-9999이며 해당기관의 홈페이지는 다음과 같다 : <http://www.cbsa-asfc.gc.ca/>

5) 이는 WTO 무역원활화 협정(Trade Facilitation Agreement) 및 그 근간인 GATT 제 5조 통과의 자유(Freedom of Transit), 제 8조 수입과 수출에 관련된 수수료 및 절차(Fees and Formalities connected with Importation and Exportation), 제 10조 무역규정의 공표 및 시행(Publication and Administration of Trade Regulations) 등의 철학에도 부합한다.

6) 일반적으로 상기 내용 해당여부와 관계없이 CBSA에 공통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Cargo Control Document (CCD),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Canada Customs Coding Form (CCCD) 각 2부씩과 원산지 증명서 1부다.

### 〈캐나다 통관절차〉<sup>기</sup>

순서	절차	내용
1	상품 선적보고	CBSA에 상품의 선적 보고함
2	상품 양도	상품 양도시 각 상품 운송단위 별로 총 14자리의 번호 (Transaction Number)를 부여함
3	선적상품 검사	캐나다 관세법에 의거하여 캐나다 세무국(Canada Customs and Revenue; CCRA)에서 임의로 상품을 검사함
4	상품 선적 회계보고	수입에 관련된 총 경비를 보고함(Accounting Package)
5	상품보관	상기 절차를 완료한 후 보관창고로 상품을 운반함

전세계적인 경향이 그러하지만, 캐나다 역시도 최근 수입 농수산물에 대한 검역에 무게를 두고 있다. 농수산물에 대한 검사는 캐나다 식품검역청(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 이하 CFIA)을 통해 별도의 검사장에서 실시한다.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 있지만, 실제로 과거 한국산 배나 감과 같은 과실류가 캐나다로 수출되는데 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은 바 있고, 그 외에도 여전히 젓갈 등 어류에 대한 수입 불허조치가 증가하고 있다.<sup>8)</sup>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안은 캐나다 CFIA가 미국 식약청(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이하 FDA)과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이유로 CFIA 또는 FDA 중 단 한 곳이라도 수입에 대해 금지조치를 내리게 되면 미국과 캐나다, 북미시장 판로가 완전히 막힐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sup>9)</sup>

상기 언급한 수출입허가법과 관련하여, 수입허가(Import Permit)가 요구되는 품목군은 매년 캐나다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가 주관하여 수입규제품목(Import Control List)를 갱신하고 있는 바 그 예시는 아래와 같다.

---

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서 제작한 「캐나다의 통관 및 운송제도」에서 캐나다 CBSA 자료를 인용한 것을 필자가 재인용하였다.

8) 국제무역에서 위생 및 검역에 대한 사안은 매우 중요한데, 실제 젓갈, 김치, 막걸리, 조미김, 인삼, 흰 우유, 삼계탕 등이 비슷한 이유로 중국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지난 2014년 초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삼계탕에 대한 수입을 허용하기 전까지 약 10년간 삼계탕은 미국의 위생 검역 장벽에 수출길이 가로막혀 있었던 바 있다.

9) 실례[實例]로 2012년 5월 1일 미국 FDA가 한국산 냉동굴을 수입하는 업체에 대하여 수입허가업체 명단에서 제외한 것에 대한 영향을 받은 CFIA 역시 약 16일 뒤인 5월 17일 같은 조치를 취했던 사례가 있다. 이후 2013년 6월 미국 FDA는 한국산 냉동굴을 다시 수입할 수 있도록 허가하였는데, CFIA는 아직까지도 해당 금수조치를 철회하지 않고 있다.

〈캐나다 수입규제품목〉<sup>10)</sup>

품목(분야)	내용
군용품	총기부품 및 총기류(라이플, 카빈, 리볼버, 피스톨, 자동소총 등) 대량살상무기(총, 유탄포, 캐논, 박격포, 탱크지뢰, 군용연막, 가스 및 화공품) 탱크 및 자가추진력에 의한 각종 군용품 폭탄, 어뢰, 로켓 및 비유도탄 및 해당 부품 수출 관리품목(Export Control List)에 해당되는 군용품
철강	탄소강 관련 제품(철판, 코일, 철도관련 제품, 기초 골재, 파이프 형 등) 특수강(철판, 봉강, 파이프, 튜브, 코일, 합금, 주석 등)
의류제품	멕시코와 미국에서 생산된 의류 및 기타 국가들에서 생산된 면화, 수제직물사 등
무기류	수입금지 무기류
낙농제품	암탈, 수탉(185g이상), 닭고기(냉동 여부 불문), 닭고기를 주재료로 한 각종 제품 등 칠면조(185g이상), 칠면조 고기(냉동 여부 불문), 칠면조를 주재료로 한 각종 제품 등 소, 송아지, 소고기 등(NAFTA국가 및 칠레산은 제외) 각종 유제품(우유, 크림, 유지분유, 버터) 아이스크림(아이스크림 및 기타 성분 함유) 계란 및 계란을 주재료로 한 각종 제품 마가린 치즈(체더, 블루 베인드, 카망베르, 브리, 브로볼롱, 구다, 모차렐라, 스위스, 그뤼에르, 하바티, 파마잔, 로마노 및 기타 각종 종류의 치즈) 요거트 버터 및 각종 유지방 제품 통밀, 메슬린, 밀분 등 파스타, 면 등 밀을 주 재료로한 각종 제품(시리얼, 비스킷, 러스크, 쿠키, 프레첼 등) 보리, 보리가루 등 보리를 주재료로 한 각종 제품
기타제품	이스라엘산 장미

10)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서 제작한 「캐나다의 통관 및 운송제도」에서 캐나다 법무부 자료를 인용한 것을 필자가 재인용하였다.

## 05 캐나다의 통관제도 II : 종류와 요건

캐나다의 통관제도와 관련해선 크게 3가지 범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필요서류나 요건, 방식에 따라 분류한 최소서류통관제도(Release on Minimum Documentation; 이하 RMD), 일반서류통관제도(Release on Full Documentation; 이하 RFD), 그리고 우편통관이 그것이다.



### 1) 최소서류통관제도(RMD)

명칭 그대로 최소한의 서류만 가지고 약식통관절차를 완료한 뒤, 관세 납부 이전에 물품을 통관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물론 서류에 대한 요구가 최소로 한정되어 있는 만큼, 그에 합당한 조건을 만족시켜야만 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데 우선 해당 업체가 통관과 관련하여 위반 전력이 있어서는 안 되고 기록을 통해 향후에도 문제의 소지가 없다고 판단되어야 한다. 통관시키고자 하는 품목이 별도의 검사를 요구하는 품목이 아니어야 함은 당연지사다. 위 요건을 만족시킨 경우에 한해서 최소 250달러에서 최대 1,000만 달러에 달하는 전년도 월 평균 관세납부액에 해당하는 수준의 보증금을 사전에 예치하면 RMD제도 활용이 가능하다. 필요한 서류는 총 3종인데 Cargo Control Document 1부와 Invoice 2부, Import Permit 또는 Health Certificate(필요 시) 1부가 그것이다.

### 2) 일반서류통관제도(RFD)

관세납부와 통관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정식통관제도다. 따라서, RMD와는 달리 별도의 자격요건은 없는데, 대신 요구되는 서류의 양과 종류가 늘어난다. Cargo Control Document, Invoice, Canada Customs Coding Form이 각 2부씩 필요하며 그 외에도 Import Permit 또는 Health Certificate, Certificate of Origin(필요 시)가 각각 1부씩 요구된다.

### 3) 우편통관

제품이 우편으로 수입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해당 제품이 20달러 미만의 가치일 경우에 관세도 소비세, 심지어 취급비용(Handling Cost)도 부과되지 않는다.

단,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진 품목의 경우엔 해당 우편물에 CBSA E14양식(CBSA Postal Import Form E14)가 부착되게 되는데, 이 경우는 수취인이 수령 시에 관세와 소비세<sup>[11]</sup>

(HST 또는 GST와 PST)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캐나다 우체국에서 부과하는 취급비용 9.95달러도 함께 납부해야 한다. 이때 수취인이 별도의 서류를 작성할 필요는 없다.

## 06 캐나다의 통관제도 III : 주요 필요서류

### 1)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앞서 본 바와 같이 캐나다에 수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선 반드시 상업송장이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재화의 가치가 2,500달러 미만이거나 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된 상품, 또는 HS코드 9810.00 해당 제품<sup>12]</sup>인 경우에 한해서는 상업송장 외에도 다른 증빙서류가 대체될 수 있으나 그 외 경우는 반드시 상업송장 또는 Canada Custom Invoice<sup>13]</sup>가 필요하다.

### 2) 원산지증명서

캐나다로의 물품 수출 시 활용할 수 있는 서류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분류된다. 하나는 가장 일반적인 원산지 증명서로 Certificate of Origin으로 불리며, 또 다른 하나는 보다 작성이 간편한 수출업자 원산지 신고서로 Exporter's Statement of Origin이라고 불린다.

특히, 최근에는 수출업자 원산지 신고서가 기존 원산지 증명서보다 더 자주 사용되고 있다. 이는 수출업자 원산지 신고서의 작성이 더 간편하고 동시에 캐나다 CBSA에서 예전과는 달리 원산지 증명서 상에 선적지 세관의 직인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수출업자 원산지 신고서는 메모 형식으로 간단히 작성하는데, 상업송장이나 CI1에 포함시켜 작성할 수도 있다. 만약 그렇지 않고 별도의 문서로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는 신고서 상에 연

---

11) 여기서 HST는 Harmonized Sales Tax의 약자로 통합판매세를 의미하고, PST는 주 판매세 Provincial Sales Tax, GST는 상품용역세로 Goods and Services Tax를 일컫는다.

12) 참고로 앞서 언급한 HS코드 9810.00 해당제품은 Chapter 98 SPECIAL CLASSIFICATION PROVISIONS - NON COMMERCIAL에서 다루고 있는 상품들을 말하는데 HS코드 9810.00.00에서는 다음과 같은 상품을 분류해놓고 있다. Arms, military stores, munitions of war and other goods the property of and to remain the property of a foreign country designated by the Governor in Council; Goods consigned to military service agencies and institutions designated by the Governor in Council where the goods are for the personal use of or consumption by nationals of countries designated under this item who are employed in defence establishments of those countries in Canada.

13) Canada Custom Invoice는 상업송장을 대체할 수 있는 서류다. 이 서류는 캐나다 CBSA가 발행한 CI(Canada Custom Invoice) 양식에 기초하여 작성하고 제출한다. 해당 양식은 총 25개의 빙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양식이 아닌 상업송장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위 25개 항목에 대한 내용이 상업송장에 반드시 포함되어야만 한다.

관 상업송장 및 CI1의 문서보호를 기재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수출업자 원산지 신고서 양식은 다음 링크의 부록 C(Appendix C)에서 확인 가능하다([www.cbsa-asfc.gc.ca/publications/dm-md/d11/d11-4-4-eng.html#a15](http://www.cbsa-asfc.gc.ca/publications/dm-md/d11/d11-4-4-eng.html#a15)).

참고로 과거에는 한국산 제품에 대해서 원산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캐나다 관세법 상 한국을 일반특혜관세(General Preferential Tariff) 대상국으로 분류함에 따라 일반 최혜국대우(Most-Favoured-Nation Treatment) 관세보다 낮은 일반특혜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한국 무역 경쟁력이 제고됨에 따라 2015년 1월 1일부로 해당 대상에서 제외, 더 이상 원산지 증명을 통한 일반특혜관세 혜택을 누릴 수 없게 되었다.

## 07 캐나다의 통관제도 IV : 기타 주요 사항

### 1) 물품의 검사, 보류, 보관 및 압류

캐나다 CBSA는 통상적으로 선택적 샘플조사로써 물품검사를 시행하는데,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 경우 그 빈도와 강도는 과거 검사 기록에 크게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세관이 요구하는 수준의 신고 서류를 오류 없이 잘 준비하고 꼼꼼하게 작성하여 신고 내용과 실제 통관하는 물품이 정확히 일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sup>14)</sup>

특히, 해당 재화가 식품검역, 국민위생보건 및 농수산물을 관리 법률에 관련된 경우, CBSA는 해당 물품에 대한 검사는 물론, 보류, 압류, 폐기, 재이용(Reuse)에 대한 전적인 권한을 동 법률 하에 부여받고 있다. 또한 그 외의 품목에 대해서도 캐나다 통관 법률(Canada Custom Act)가 검사, 보류, 압류, 폐기 및 재이용에 대하여 CBSA에 재량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캐나다로 수입되는 전 품목이 철저한 법률적 관리 하에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sup>15)</sup>

---

14) 표본조사를 시행함은 통관절차에서의 시간 및 비용절감을 그 목적으로 하는데, 세관의 판단에 따라 필요 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도 한다. 전수조사에 대한 부담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상기 언급한 것처럼 신고 서류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히 작성하는 동시에 통관 이력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여기서 세관조사라 함은 상업송장 또는 Canada Custom Invoice와 해당 수입 물품의 비교를 뜻하며, CI1양식 내용과 수입 물품의 동일성이 그 핵심이다. 상품 정상품의 화폐가치, 수출업자와 수입업자 정보, 최종 도착지 등에 대한 내용의 조사다 실시한다.

15) 캐나다 CBSA와 긴밀한 협력 관계의 성격을 띠고 있는 기타 정부부처 및 기관에 대한 정보는 이하 웹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다: <http://www.cbsa-asfc.gc.ca/import/reflist-listeref-eng.html/>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CBSA와의 협력 하에 2003년 이후부터 CFIA에서는 일반 상품의 검역과 동시에 동식물과 그 가공품, 관련제품 및 사료에 대한 별도의 검사를 진행하고 이를 위해 고유한 검역권한을 가지고 있다. 관련 검역 요건은 품목마다 다르며 내용도 복잡하므로 CFIA의 웹사이트(<http://www.inspection.gc.ca/>)를 통하여 이른바 자동 수입 참고 시스템(Automated Import Reference System; AIRS) ([http://airs-sari.inspection.gc.ca/airs\\_external/english/decisions-eng.aspx](http://airs-sari.inspection.gc.ca/airs_external/english/decisions-eng.aspx))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타 식용 제품에 대한 수입 검역 요건, 통관 절차 등에 대한 질의응답은 국가 수입 서비스 센터(National Import Service Center; NISC)에서 찾아볼 수 있다.<sup>16)</sup>

이후 보관된 상품은 CBSA의 통보 이후 40일 이내에 수취인이 수령토록 한다. 관세 및 소비세 등을 지불하고 물품을 수령하게 되며, 보관기관에도 일정한 금액의 보관료가 부과되므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재화에 대한 수령의사를 CBSA에 신고하는 것이 좋다. 만약 40일 이내에 세관에서 보관 중인 물품에 대한 수령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 물품은 CBSA 창고로 옮겨지게 되며, 그 이후 30일이 추가적으로 지나도 수령되지 않은 물품은 CBSA의 판단 하에 폐기 처분될 수도 있다.

## 2) 통관본드(Custom Bond)

통관본드라는 것이 있다. 수입자 측에서 관세 및 소비세 등 각종 의무를 지킬 것을 약속하며 세관에 제공하는 일종의 담보를 말한다. 이를 통해 빠른 통관이 가능해지는데, 보통 통관본드 예치에는 현금이나 수표, 캐나다 연방정부의 국채 등을 이용할 수 있고 그 외에는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통관본드 D120양식이 사용 가능하다.

## 3) 캐나다 식품관련 검역 정보와 법규 및 규제<sup>17)</sup>

캐나다로 수출되는 식품 및 의약품은 국민보건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있는 만큼 그 법규와 규제가 특히 까다로운 바 철저한 준비와 주의가 필요하다. 캐나다 식품 및 의약품 안전법규 및 규제(Food and Drugs Act and Regulations)는 캐나다 내 생산 및 수입되는

---

16) 캐나다 국가 수입 서비스 센터는 미국과 캐나다 동부 시간 기준 오전 7시부터 새벽 3시까지 이용 가능하며, 캐나다 또는 미국에서는 1 - 800 - 835 - 4486으로, 지역 내 또는 외국에서는 1 - 289 - 247 - 4099로 문의할 수 있다. 팩스를 이용할 경우는 1 - 613 - 773 - 9999를 이용하면 된다.

17) 이 부분은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주관하고 (주)아씨이십일에서 수행한 「Mini Market Report」 - 캐나다 숙취 해소음료 관련 보고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하였다.

모든 식품과 의약품에 대한 기본적인 규제로써 캐나다 국민을 대상으로 한 먹거리 안전을 위한 법안이다. 이 법안에 따라 식품의 구성요소, 라벨링, 기공, 유통 그리고 판매까지 포괄적인 규제가 가능하며 캐나다로 식품을 수출하는 경우 반드시 해당 요건을 충족시켜야만 한다.

위 법규를 기반으로 그 외에도 육류, 어류 및 채소류의 생산 및 유통 규제를 위한 Meat Inspection Act and Regulations, Fish Inspection Act and Regulations, Canada Agricultural Products Act and Regulations가 각각 존재하며 이에 더하여 식품 판매자로 하여금 제품의 열량, 영양소, 질량 등의 식품정보를 반드시 포장 앞에 표기하도록 규정하는 Consumer Packaging and Labelling Act and Regulations가 있다.

최근 한국산 김치, 젓갈, 기타 가공식품 등의 알레르기 유발 문제와 관련한 라벨링 불량 문제 등으로 한국산 식품들이 무더기 리콜된 사례가 있고, 캐나다 내 수입업체 및 유통회사들 간에 한국기업 제품이 라벨링 및 영양분석표에 취약하다고 인식한다는 사실, 또한 한국 식품 수출업자들이 미국과 캐나다의 라벨링 방식을 비슷하다고 이해하지만 실제 두 국가의 표기 언어[캐나다는 영어와 불어가 국가 공식 공용어이므로 두 가지 언어로 표시]와 형식이 다르다는 사실 등을 감안하여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식품 수출 시에는 화물통제문서(Cargo Control Document) 2부, 반입된 물품의 총 가치를 나타내는 송장(invoice) 2부, B3양식 문서 2부, 수출 및 수입 허가증, 자격증, 그 외 CBSA가 요구하는 모든 문서(보통 원본)가 필요하다.

#### 4) 캐나다의 물류 시스템

캐나다의 물류 구조는 항공, 해상, 철도, 트럭, 화물운송업자, 통관사, 창고, 택배 등의 공급자와 제조 업체, 도소매업자의 수요자 측면으로 분류할 수 있다.

캐나다의 물류 시스템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전산화 시스템과 더불어 GPS 기술을 활용한 집배송 체계가 안착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재고를 최소로 유지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하는 등 효율적인 물류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첨단 ICT 기술의 접목을 통해, 광활한 국토 면적 및 이에 따른 태생적인 지리적 난제에도 불구하고 배송시간의 최소화 및 물류산업의 고도화를 이룩했다.

## 5) 국가별 통관 규정 사항 : 캐나다<sup>18)</sup>

코드	국가	가치 상한	서류 & 특례 조항
CA	캐나다		<p>Commercial invoice, Canada Schedule이 없을 경우 HKG T/S로 발송, 한 Con당 최대 300kg 가능, Invoice작성 시 Samples, Gifts, Parts, Clothing, Tools, Machinery – 은 불가하며 사용 용도와 원산지를 표기, Connote와 System상에 발송인/수취인의 주소와 연락처가 상세하게 기재되어야 하며 수취인 이름도 full name으로 명기. 그렇지 못할 경우 서비스 지연과 함께 추가 비용이 발생</p>
CA	캐나다		<p>제한품목 : 개인간 발송 시 물품이 (USD400이하, New Product)만 발송가능하며 수취인이 Broker 통관, Used Item은 발송 불가, 화장품일 경우 무게 제한없이 샘플 발송 가능(GST의 6% 관세 부과)</p> <p>음식류 : CFIA의 승인이 필요하며 추가 비용(통관 및 핸들링) 발생 시, 수취인에게 청구,</p> <p>육류 : 상업적인 수입만 허용되며 역시 CFIA의 승인이 필요함. 개인 거주 지역으로의 비상업적인 수입은 불가하며 발견 시 처분,</p> <p>유가공품 : 대부분의 유가공품의 예 : 치즈 – 비상업적인 수입은 20kgs, CAD20 이내일 경우 큰 제약 없이 가능하나 상업적일 경우엔 CFIA의 승인이 필요,</p> <p>제약품 : 사전에(신고 전) Health Canada로부터의 승인이 필요,</p> <p>화장품 : 사전에(신고 전) Health Canada로부터의 승인이 필요,</p> <p>동물 가죽 제품류 : CFIA의 승인이 필요, Gift일 경우 CAD60 이상의 선물에는 세금, 관세, Brokerage 비용 등이 추가 발생될 수 있으며 수취인에게 청구될 것임. 선물의 내용을 항목별로 상세히 기재</p> <p>캐나다에서 알코올류의 통관은 최종도착지가 속한 주(province)의 세관에서 진행해야 하며 기타 주를 경유할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발송 국가로 청구되며 통관 소요 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며 상세 정보는 물품 발송 전 TNT CA에 문의,</p> <p>금지품목 : 여권</p>

18) 표는 [http://www.tntexpress.co.kr/brochure2008/country\\_info.pdf](http://www.tntexpress.co.kr/brochure2008/country_info.pdf)에서 인용하였다.

## 6) 수입금지품목 : 캐나다

캐나다는 관세표(또는 관세양허표; Customs Tariff)에서 98류(Chapter 98)로 분류하는 금지조항(Prohibition Provision)에 따라 수입금지 품목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캐나다 관세표(Canadian Customs Tariff)법 제136조<sup>19)</sup> 에서는 금지조항에 규정된 품목(HS코드 9897.00.00, 9898.00.00, 9899.00.00)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캐나다 수입금지 품목〉<sup>20)</sup>

품목(분야)	내용	관련 HS코드
동물	몽구스과에 속한 동물 : Galidia, Galidictis 등 양식용, 연구용, 관람용의 것으로 Canadian Wildlife Service로부터 적절한 승인을 받고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	9897.00.00
금속	위조 지폐 및 동전	9897.00.00
침구	HS코드 9806, 9807, 9808, 9810에 의한 침대 매트리스나 중고 매트리스 중 살균 처리된 것을 제외한 모든 중고 매트리스	9897.00.00
인쇄물	인쇄판권이 캐나다나 영국에 있는 책자의 재판	9897.00.00
일반제품	완제품이나 그 부속품이 죄수들에 의해 만들어진 경우 캐나다 인증법(Trade-marks Act)이나 캐나다에서 수입을 불허하는 지역에서 제품이 수입되는 경우	9899.00.00 및 9897.00.00
연막	자동차용이나 선박용의 연막(smoke screen)	9897.00.00
자동차	아래의 경우를 제외한 모든 중고차 - HS코드 9801.10.00, 9807.00.00, 9808.00.00, 9809.00.00, 9810.00.00 품목 - 통관 관련 법이나 혹은 다른 캐나다 각 지방정부 법령 등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몰수된 경우 - 상속에 따라 반입된 경우 - NAFTA 조항에 따라 미국, 멕시코로부터 수입되고 특정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9897.00.00

19) 해당 법령은 본 웹사이트(<http://laws-lois.justice.gc.ca/eng/acts/c-54.011/page-68.html#h-69>)에서 찾을 수 있으며 원문은 아래와 같다: PART 5 PROHIBITED GOODS Prohibited imports 136. [1] The importation of goods of tariff item No. 9897.00.00, 9898.00.00 or 9899.00.00 is prohibited. Subsection 10(1) does not apply [2] Subsection 10(1) does not apply in respect of goods referred to in subsection (1)

20) 표는 <http://tradenavi.or.kr/CmsWeb/viewPage.req?idx=PG0000000554>에서 인용하였다.

〈캐나다 수입금지 품목〉계속)

품목(분야)	내용	관련 HS코드
자동차	미국에서 수입된 경우 2009년에서 10년 사이 : 출고된 후 10년 이하의 중고차 2011년에서 12년 사이 : 출고된 후 8년 이하의 중고차 2013년에서 14년 사이 : 출고된 후 6년 이하의 중고차 2015년에서 16년 사이 : 출고된 후 4년 이하의 중고차 2017년에서 18년 사이 : 출고된 후 2년 이하의 중고차 2019년 1월1일 이후 출고된 중고차	9897.00.00
비행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한 모든 중고 비행기 - HS코드 9803, 9809, 9810에 의해 수입된 경우 민간 및 화물 수송만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 - 항공법이나 각 주의 법령에 의해 압류된 경우 - 캐나다 국방부에서 국방의 목적으로 반입하는 경우 - 미국에서 수입되는 경우	9897.00.00
성냥	백색 인광성 성냥(White Phosphorus Matches)	9897.00.00
무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한 모든 자동화기, 무기, 총탄, 무기 제조 기기 및 관련 기기 - 관련 공무원이 직무상으로 수입하는 경우 - 캐나다 국방부, 경찰, 관련 부처로부터 위임을 받아 개인이 수입하는 경우 - 캐나다 무기관련법의 예외조항에 속하는 비시민권자가 수 입하는 경우 - 캐나다 정부로부터 허가권을 취득하여 수입하는 경우나 캐 나다를 경유하여 제3국으로 운반되는 캐나다 무기관련법의 35조에 의해 자동화기 수입이 가능한 비 시민권자나 허가권을 취득한 자가 수입하는 경우 - 해외에서 자동화기 구입한 캐나다 시민으로서 무기 취급 허 가를 취득한 경우	9898.00.00
출판물	그림, 사진, 책, 프린트물 등 각종 인쇄물 중 Criminal Code 에 의거, 인종차별, 범죄, 반역, 학대 등을 유발할 소지가 있는 경우, 범죄나 폭력을 불러 일으킬 소지가 높은 포스터나 전 단, 아동 포르노를 주제로 한 사진, 필름, 비디오, CD, DVD 등 모든 관련 영상을	9899.00.00

## 08 캐나다의 주요 공항 및 항구

### 1) 주요 공항

캐나다 내에는 캐나다 교통국(Transport Canada)에서 국제공항으로 지정한 주요 공항이 13개 정도가 되지만, 그 중에서도 주요 대도시에 위치한 토론토 국제공항, 밴쿠버 국제공항, 몬트리올 국제공항, 오타와 국제공항을 예로 들 수 있다. 참고로 이 중 한국 방문객들의 이용빈도가 가장 높은 공항은 토론토와 밴쿠버 국제공항이다.

각 공항의 주소 및 연락처 등 기본정보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토론토 국제공항 <sup>21)</su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정식명칭 : Toronto Lester B. Pearson International Airport</li><li>• 공항코드 : YYZ</li><li>• 웹사이트 : <a href="http://www.torontopearson.com/">http://www.torontopearson.com/</a></li><li>• 주 소 : 3111 Convair Drive, Toronto AMF, Ontario, Canada</li><li>• 우편번호 : L5P 1B2</li><li>• 전화번호 : 1 - 416 - 776 - 3000(관리공단), 1 - 416 - 247 - 7678(제1터미널), 1 - 416 - 776 - 5100(제3터미널)</li></ul>
밴쿠버 국제공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정식명칭 : Vancouver International Airport</li><li>• 공항코드 : YVR</li><li>• 웹사이트 : <a href="http://www.yvr.ca/">http://www.yvr.ca/</a></li><li>• 주 소 : 3211 Grant McConachie Way, Richmond, British Columbia, Canada</li><li>• 우편번호 : V7B 0A4</li><li>• 전화번호 : 1 - 604 - 207 - 7077</li></ul>
몬트리올 국제공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정식명칭 : Montreal Pierre Elliot Trudeau International Airport</li><li>• 공항코드 : YUL</li><li>• 웹사이트 : <a href="http://www.admtl.com/">http://www.admtl.com/</a></li><li>• 주 소 : 975 Romeo-Vachon Blvd. North, Suite 317, Motreal, Québec, Canada</li><li>• 우편번호 : H4Y 1H1</li><li>• 전화번호 : 1 - 514 - 394 - 7377, 1 - 800 - 465 - 1213</li></ul>

21) 1970년대 초 토론토 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대한 승객 증가로 1972년 6월 제2터미널이 문을 열었지만, 이후 현재의 모습으로 새롭게 단장한 제1터미널로 인하여 기존의 제2터미널은 2007년부터 2008년에 걸쳐 해체되었다.

### 오타와 국제공항

- 정식명칭 : Ottawa MacDonald-Cartier International Airport
- 공항코드 : YOW
- 웹사이트 : <https://yow.ca/>
- 주 소 : 1000 Airport Parkway Private, Ottawa, Ontario
- 우편번호 : K1V 9B4
- 전화번호 : 1-613-248-2000

## 2) 주요 항구

캐나다의 주요 무역항은 몬트리올(魁백 주), 헐리팩스(노バス코샤 주), 밴쿠버(브리티시컬럼비아 주)의 3곳으로 요약할 수 있다. 몬트리올과 헐리팩스는 대서양에, 밴쿠버는 태평양과 맞닿아 있는데 특히 몬트리올의 경우는 캐나다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이며 캐나다 최대의 무역항으로서 목재, 밀, 버터, 모피, 밀가루, 치즈 등을 대량으로 수출하는 주요 루트로서 활용되고 있다. 헐리팩스는 캐나다 태평양철도 및 내셔널철도의 기점으로서 겨울철에는 세인트로렌스 강 수로가 얼어붙음에 따라 대체항으로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끝으로 캐나다 서쪽 끝에 위치한 밴쿠버의 경우, 태평양으로 통하는 캐나다 주요 무역항으로써 항구에는 대규모 부두와 곡물엘리베이터 등 우수한 항만시설을 갖추고 있다.

각 항구의 주소 및 연락처 등 기본정보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몬트리올 항구

- 웹사이트 : <http://www.port-montreal.com/>
- 주 소 : 2100 Pierre-Dupuy Avenue, Wing 1, Montreal, Québec, Canada
- 우편번호 : H3C 3R5
- 전화번호 : 1 - 514 - 283 - 7011

### 헬리팩스 항구

- 웹사이트 : <http://www.portofhalifax.ca/>
- 주 소 : Halifax Port Authority, P.O.Box 336, Halifax, Nova Scotia, Canada
- 우편번호 : B3J 2P6
- 전화번호 : 1 - 902 - 426 - 8222

### 밴쿠버 항구

- 웹사이트 : <http://www.vfpa.ca/>
- 주 소 : 100 The Pointe, 999 Canada Place, Vancouver, British Columbia, Canada
- 우편번호 : V6C 3T4
- 전화번호 : 1 - 604 - 665 - 9000